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에 관한 考察

邊 宇 烈*

〈木 次〉

- | | |
|--------------------|---------------------------|
| I. 緒 論 | III. 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 比較·分析 |
| II. 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 | 1. 學校圖書館資料의 名稱과 範圍 |
| 1. 韓國 | 2. 總資料數와 年次增加量 |
| 2. 中國 | 3. 資料의 主題別 構成基準 |
| 3. 日本 | IV. 韓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案) |
| 4. 美國 | V. 要約 및 結論 |
| 5. 英國 | 參考文獻 |

I. 緒 論

基準은 基本이 되는 標準이다.¹⁾ 어떠한 組織이나 機關은 그들의 業務遂行을 圓滑하게 하고, 그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達成해야 할 目標가 되는 일정한 基準이 있어야 한다. 圖書館도 역시 하나의 組織體로서 圖書館의 業務를 圓滑하게 遂行하고, 業務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要素를 規定한 일정한 圖書館基準이 있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基準이란 도서관의 機能을 構成하기 위하여 基礎가 되고

*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文獻情報教育科 教授

1)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어문각, 1992), p. 610.

標準이 되는 基準으로²⁾ 圖書館 專門職團體나 정부당국이 설정한 目標의 量, 質, 範圍, 水準을 달성하고 評價하기 위한 目的으로 제정한 하나의 尺度이다.³⁾

그리고, 기준은 最小限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준을 段階別로 나누어 理想的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모범적인 業務水準이나 업무의 過程까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質的인 基準도 있고, 量的인 基準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圖書館基準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즉, 公共圖書館 基準, 대학도서관 기준, 學校圖書館 基準, 도서관봉사 기준 등으로 나누어 제정되고 있는데, 內容은 기준의 目的과 기능을 포함하여 施設基準, 직원기준, 資料基準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圖書館基準의 내용중에서 施設, 資料, 職員을 들어 圖書館의 3要素라고 한다. 이들 3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圖書館資料는 圖書館奉仕의 出發點인 동시에 終着點이 되는 가장 基本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圖書館資料는 선정과정에서부터 利用者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利用者의 要求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러 가지 종류의 도서관중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도서관은 學校圖書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왜냐 하면, 初·中·高等學校 시절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習慣과 能力이 형성되어 있어야 만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도서관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에 진출해도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學校時節에 學校圖書館을 이용하는 習慣과 機能 그리고 態度를 전혀 습득하지 않고 大學에 進學하거나 社會에 進出하여 하루 아침에 대학도서관, 公共圖書館, 전문도서관 등의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心臟部 役割을 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는 學校現場에서 教師와 學生들에게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조차 인정받지 못하여 학교도서관이 教育課程 展開에 대한 기여는 커녕 교사와 학생들의 教授와 學習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

2)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화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6), p. 53.

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84.

의 核心的인 機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가장 重要的 것은 학교도서관에 所藏하는 資料의 문제이다. 이러한 資料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⁴⁾

첫째, 學校圖書館의 資料는 教育課程과 관계없는 小說이나 隨筆과 같은 文學書籍이나 辭典이나 百科事典과 같은 參考圖書 정도의 資料構成이 아니라 教育課程과 밀접한 자료를 소장하여 이들 자료를 教育現場에 제공하여 教育課程 遂行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教育課程과 一致되는 자료를 소장하여 教師에게는 敎授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고, 학생들에게는 受驗과 學習뿐만 아니라 敎養의 함양과 餘暇 善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만이 教師와 學生들이 學校圖書館을 찾고, 그 必要性도 認定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순한 文獻資料中心의 圖書館運營을 止揚하고 도서와 함께 連續刊行物, 視聽覺敎材까지 수용하여 敎授와 學習에 필요한 모든 資料를 통합한 教育정보센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자료는 知識과 情報을 담은 用器만 다를 뿐이지 그 자료속에 포함되어 있는 內容은 모두가 소중한 것이므로 지식과 정보를 종이에 담았는가, 비닐에 담았는가, 자기매체에 담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文獻媒體보다는 視聽覺媒體가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效率性を 높여 줄 뿐만 아니라, 學業成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檢證된 바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도서관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學校圖書館과 圖書館基準 內容중에서 基本的인 요소가 되는 資料基準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世界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을 概觀한 다음에 이들을 比較·分析하여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을 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資料를 提示하고자 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4) 金谷喆,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의 發展方向,” 教育개발(한국교육개발원), 第9卷, 第2號 (1987. 4), pp. 44-45.

II. 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

1. 韓 國

1) 韓國圖書館協會의 學校圖書館基準

1967년 5월 25일과 26일 兩日間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全國圖書館大會 學校圖書館部會에서 채택된 學校圖書館基準⁵⁾은 우리나라 最初의 학교도서관기준이다. 이 기준의 草案은 1965년 8월 한국도서관협회 기술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의 學校圖書館分科會에서 『市·道教育委員會 學校圖書館運營指針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市·道教育委員會 學校圖書館運營指針案』은 1965년 1월 慶尙南道 教育委員會에서 各級 學校에 시달한 『慶尙南道 學校圖書館運營指針』을 골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 기준은 原則, 학교도서관의 목적, 學校圖書館職員, 학교도서관자료, 學校圖書館施設, 학교도서관경비, 學校圖書館運營, 도서관이용지도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기준이 제정된지 30년이 경과하여 現實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圖書 이외의 雜誌, 視聽覺資料 등에 대한 基準이 없으며, 年間增加數도 없다. 이 기준 중에서 學校圖書館資料에 대한 내용만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學校圖書館資料의 種類는 圖書, 신문, 雜誌, 버어티컬파일자료, 視聽覺資料 등을 收藏한다.

② 도서관자료의 選擇은 司書教師가 중심이 되어서 하되 教職員 및 학생의 個人的 또는 公式的 의견이 反映되어야 한다.

③ 基本藏書는 학생 1인당 5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이를 超過한 학교에서는 매년 1인당 0.5책 이상의 新刊圖書를 수입하도록 한다.

④ 藏書의 配分比率은 가급적 <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지하도록 하되, 實業系 高等學校에 있어서는 專門部門의 比率을 늘일 수도 있다.

5) 韓國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基準," 도협월보, 第8卷, 第5號 (1967. 6), pp. 7-10.

〈표 1〉 藏書類別配分比率基準

| 類 別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純粹科學 | 技術科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地誌 | 그림책, 其他 | 計 |
|-------|----|----|----|------|------|------|----|----|----|--------|---------|------|
| 初等學校 | 4% | 2 | 2 | 8 | 13 | 7 | 5 | 3 | 25 | 16 | 15 | 100% |
| 中 學 校 | 5 | 3 | 3 | 10 | 15 | 10 | 6 | 6 | 27 | 15 | - | 100 |
| 高等學校 | 6 | 4 | 4 | 10 | 15 | 10 | 7 | 9 | 25 | 10 | - | 100 |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의 學校圖書館基準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은 1969년 12월 4일에 대통령령 제4,398호로 공포된 후 15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1996년 6월 22일 대통령령 제14,920호이다. 學校施設·設備基準令 제5조 6항의 <별표 3> 學校圖書館基準에는 열람좌석수와 備置圖書數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7년이 경과되도록 學校圖書館에 관한 내용은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어 現實성이 전혀 없으며, 圖書 이외의 자료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年次增加나 廢棄基準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基準 중에서 備置圖書數만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學校圖書館의 備置圖書數

| 구 분 | 비 치 도 서 수 |
|-------|---|
| 初等學校 | 1학년당 單行本 100권 이상 |
| 中 學 校 | 1학년당 單行本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高等學校 | 1학년당 單行本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의 學校圖書館資料基準에는 학교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單行本 이외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제5조 5항의 <별표 2>에서 視聽覺教室의 室面積基準을 規定하고 있다.

3) 韓國圖書館基準의 學校圖書館基準

韓國圖書館基準⁶⁾은 韓國圖書館協會가 1963년에 制定된 圖書館法이 거의 20년이 경과되도록 變化하는 社會文化的 여건에 알맞게 손질 한번 하지 못하게 되자 圖書館法을 改正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1년에 基準分科委員會에서 마련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는 公共圖書館基準, 大學도서관기준, 學校圖書館基準, 특수도서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學校圖書館基準은 學校圖書館의 原則, 목적, 組織과 人事, 교육, 俸仕, 자료, 施設,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基準은 앞에서 살펴 본 두가지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발전된 것이지만 圖書 이외의 連續刊行物이나 視聽覺資料에 대한 基準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 기준 중에서 資料基準에 대한 사항을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學校圖書館資料는 圖書資料와 非冊子資料로 構成한다.
- ② 學校圖書館은 學生과 敎職員의 必要에 응할 수 있도록 資料를 收集하고, 特定한 敎師나 특정한 主題分野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③ 學校圖書館은 學生과 敎職員에게 學習活動을 도와줄 수 있는 參考圖書를 갖추어야 한다.
- ④ 학교도서관의 基本資料數, 年間增加冊數 및 年間除籍冊數 비율은 <표 3>과 같이 한다.

<표 3> 學校圖書館의 基本資料 基準

| 學 校 別 | 學校規模 | 基本藏書 | 年 增 加 | 年平均除籍率 |
|--------|---------|--------|--------|------------|
| 初等學校 | 18학급 미만 | 3,200책 | 300책 | 총자료 0.3%이내 |
| | 18학급 이상 | 5,500책 | 500책 | 총자료 0.3%이내 |
| | 24학급 이상 | 7,500책 | 700책 | 총자료 0.3%이내 |
| | 36학급 이상 | 8,000책 | 1,000책 | 총자료 0.3%이내 |
| 中·高等學校 | 12학급 미만 | 3,200책 | 500책 | 총자료 0.3%이내 |
| | 12학급 이상 | 6,500책 | 600책 | 총자료 0.3%이내 |
| | 24학급 이상 | 8,500책 | 800책 | 총자료 0.3%이내 |
| | 36학급 이상 | 9,000책 | 1,000책 | 총자료 0.3%이내 |

6)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⑤ 자료의 배분비율은 가급적 <표 4>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지하도록 하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전문분야 자료구성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표 4> 학교도서관의 자료유별 배분비율 기준

| 學校別 | 類別 | | | | | | | | | | | 計 |
|------|----|----|----|------|------|------|----|----|----|----|-----|------|
|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純粹科學 | 技術科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 그림책 | |
| 初等學校 | 4 | 2 | 2 | 8 | 13 | 7 | 5 | 3 | 25 | 16 | 15 | 100% |
| 中等學校 | 5 | 5 | 3 | 10 | 15 | 8 | 6 | 4 | 27 | 17 | - | 100% |
| 高等學校 | 6 | 6 | 4 | 10 | 15 | 9 | 7 | 8 | 25 | 10 | - | 100% |

2. 自由中國(臺灣)

自由中國의 圖書館基準는 1960년 中國圖書館學會가 오래된 各種 圖書館法令을 改正하기 위하여 臺灣省 圖書館事業 改善發展委員會를 組織하고 館種別 圖書館基準의 改正을 추진하여 政府의 圖書館法 修正法令으로 삼았고, 나아가서는 館種別 圖書館의 業務를 발전시키는데 參考가 되도록 圖書館標準⁷⁾을 制定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中國 圖書館基準는 館種別로 年次의으로 中國圖書館學會 總會에서 通過된 후 1965년 7월 中國圖書館學會가 최종적으로 審議하고 公表하였다.

圖書館基準의 內容은 공공도서관기준, 大學圖書館基準, 학교도서관기준, 圖書館建築 設備基準으로 되어 있으며, 學校圖書館基準는 基本原則, 도서관자료, 建物 및 設備, 인원 및 경비, 經營上의 重點事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學校圖書館資料基準의 特徵은 初等學校에 대한 資料基準이 排除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기준이 제정된 지 무려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現實성이 不足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學校 圖書館基準 중에서 圖書館資料에 관한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學校圖書館의 所藏資料는 圖書 이외에 잡지, 新聞, 팜플렛, 그림 및 학습과 연구를 돕는 기타의 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영화필름, 환등용슬라이드, 음반, 그림,

7) 中國圖書館學會, “中國圖書館基準,” 千惠鳳 譯, 道赫월보, 제9권, 제8호 (1968. 10), pp. 8-20.

8 圖書館學論集(第 28輯)

地球儀 등의 기타자료는 學校의 실제적인 所要에 따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② 圖書館資料의 선택은 教育課程의 要求에 균형이 잡히고 학생의 讀書程度와 趣味에 적합하며 또 학생의 적당한 餘暇利用에 有益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圖書館資料의 構成은 基本 參考圖書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자료는 字典, 辭典, 백과사전, 年鑑, 핸드북, 가이드, 書目, 색인, 地圖 등의 tool과 지식 각 분야의 重要著作 등이다. 기본자료와 연간증가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自由中國의 基本資料와 年間增加數

| 구 분 | 자 료 수 | 연간증가수 |
|------|---|-------------------------|
| 초등학교 | 없 음 | 없 음 |
| 중학교 | 학생 1인당 5권. 기본참고도서 1,000명이하 500종 1,000명이상 700종 잡지 1,000명이하 15종 1,000명이상 20종 시청각자료는 학교의 실제적인 소요에 따라 비치 | 1인당 신간서 0.25~0.5권 |
| 고등학교 | 학생 1인당 5권. 기본참고도서 1,000명이하 700종 1,000명이상 1,000종 잡지 1,000명이하 20종 1,000명이상 30종 | 1인당 신간서 0.25~0.5권 |

④ 구입비치하여야 할 자료의 주제별비율은 <표 6>과 같다.

<표 6> 資料構成의 主題別 比率

| 類 別 | 細 部 內 容 | 百 分 率 | |
|--------|--------------------------|-------|------|
| | | 中學校 | 高等學校 |
| 總 類 | 字典, 辭典, 類書 등 | 5 | 6 |
| 哲 學 | 論理, 心理, 倫理 등 | 1 | 3 |
| 宗 教 | 佛教, 道教, 基督教, 回教 등 | 1 | 1 |
| 社會科學 | 教育, 政治, 經濟, 法律 등 | 12 | 12 |
| 國語, 文字 | 各國의 言語 | 3 | 5 |
| 自然科學 | 數學, 天文, 物理, 化學 등 | 11 | 11 |
| 應用科學 | 醫學, 農業, 工業, 製造 등 | 10 | 10 |
| 藝 術 | 音樂, 體育, 圖畫, 彫刻, 寫眞 등 | 9 | 9 |
| 文 學 | 散文, 戲曲, 小說 등 | 28 | 25 |
| 歷史, 地理 | 中國과 外國의 歷史, 地理, 傳記, 紀行 등 | 20 | 18 |

3. 日 本

日本の 學校圖書館基準은 1953년에 제정된 學校圖書館法에서 출발한 것이며, 學校圖書館法은 1947년에 제정된 學校教育法에 의해서 시작된다. 즉, 學校教育法 施行規則에서 初·中·高等學校에는 학교의 教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圖書館이 필요한 施設로서 制度化되었는데, 이러한 目的과 運營의 大綱이 學校圖書館法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教育環境 改善과 더불어 注入式 教育, 劃一主義의 教授法을 대신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問題解決中心의 교육이 강하게 요구되어, 學習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비한 學校圖書館의 設치가 自主學習의 根據地로 요청된 것이다. 아울러 1949년 文部大臣이 答申한 公立學校의 圖書資料, 건물, 設備, 경비, 人的 構成, 운영 등에 관한 學校圖書館基準의 法制化, 학교도서관경비의 公費化, 司書教師의 養成과 配置 등에 대한 요구가 1950년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의 結成과 함께 現場의 교사는 물론 學父母와 지식인들의 支援을 받아 전국적으로 學校圖書館法 제정운동이 무르익어 1953년 議員立法으로 學校圖書館法이 제정되었다.⁸⁾

學校圖書館基準은 學校圖書館法에서 말하는 국가의 補助金 支給의 交付基準을 만들기 위한 基礎資料로서 입안된 정치적인 法令과 같은 學校圖書館基準으로서 현재는 學校圖書館法에서는 削除되어 있으나 學校圖書館法 제10조에 「設備 또는 圖書의 基準」이 있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文部大臣이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에 학교도서관의 機能, 직원, 資料, 시설설비, 運營 등의 기준에 대하여 答申한 것이 1959년 文部省이 刊行한 「學校圖書館 運營의 手びき」에 수록되었다. 이것이 最初の 學校圖書館基準이 된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 기준이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하기 위한 基本的 要素로서 學校圖書館의 管理와 運營에 있어서 標準이 되는 하나의 參考資料로 되어 있다.⁹⁾

日本에서 公表된 學校圖書館基準에는 여러 가지 種類가 있지만 가장 代表的인 것은 1959년 文部省이 發行한 「學校圖書館 運營의 手びき」에 수록되어 있는 學校圖書館基準과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가 1977년에 公表한 學校圖書館數量基準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8)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 編輯委員會, 圖書館情報學 ハンドブック(東京:丸善, 1968), p. 203.

9) 草野正名, 最新圖書館學事典(東京:學藝圖書, 1984), p. 148.

1) 文部省의 學校圖書館基準

1959년 文部省이 刊行한 『學校圖書館 運營의 手びき』에 수록되어 있는 學校圖書館基準인데, 이것은 原則, 기능, 職員, 자료, 整理, 건물·설비, 經費, 운영, 利用指導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에 대한 基本的 思考方式, 運營方針을 비롯하여 職員, 자료, 施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數量을 제시하고 있어서 參考가 되지만 基本藏書數나 經費 등은 現實的이지 못한 側面이 있다. 그리고,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에 관한 最低限의 基準을 提示한 것이지 最大限의 基準을 提示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¹⁰⁾ 이 기준 중에서 學校圖書館資料에 대한 내용을 概觀하기로 한다.

① 學校圖書館資料에는 圖書이외에 잡지, 新聞, 팸플렛, 리플렛, 오림자료, 地圖, 그림, 그림엽서, 寫眞, 그림연극, 필름, 슬라이드, 音盤 등의 視聽覺資料와 학생의 작품 등을 포함한다.

② 學生 및 教師의 각종 要求에 부응할 수 있도록 資料를 收集하며, 특정 주제에 偏重되지 않고 調和있는 자료구성을 한다.

③ 基本圖書은 기본적인 辭典, 백과사전, 年鑑, 통계, 人名·地名 등의 事典, 지도, 圖鑑 등을 포함하는데, 기본도서와 年間증가수를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基本圖書와 年間增加數

| 구 분 | 자 료 수 | 연간증기수 |
|------|---|-------------|
| 초등학교 |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500종 잡지 900명이하 약 10종, 901명이상 약 15종 | 1인당 0.5권 이상 |
| 중 학교 |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700종 잡지 900명이하 약 15종, 901명이상 약 20종 | 1인당 0.5권 이상 |
| 고등학교 |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1,000종 잡지 900명이하 약 20종, 901명이상 약 30종 | 1인당 0.5권 이상 |

10) 圖書館教育研究會, 新編學校圖書館通論, 改訂版(東京:學藝圖書, 1992), pp. 26-27.

④ 장서의 主題別 配分比率은 다음의 <표 8>을 考慮하여, 학교의 教育課程, 地域의 實情 등을 고려해서 設定한다.

<표 8> 主題別 配分比率

| 類別 | 總類 | 哲學 宗教 | 歷史 | 社會 科學 | 自然 科學 | 工學 工業 | 産業 | 藝術 | 語學 | 文學 | 그림책, 其他 | 計 |
|------|----|----------|----|----------|----------|----------|----|----|----|----|------------|------|
| 初等學校 | 5 | 2 | 15 | 9 | 13 | 5 | 5 | 5 | 2 | 20 | 19 | 100% |
| 中學校 | 7 | 3 | 14 | 10 | 15 | 5 | 5 | 7 | 5 | 29 | - | 100% |
| 高等學校 | 8 | 5 | 13 | 10 | 15 | 5 | 5 | 7 | 7 | 25 | - | 100% |

⑤ 視聽覺資料의 設備基準에는 그림연극 케이스, record case, slide 또는 film 케이스, 陳列 케이스, 그림연극 무대, slide projector, slide viewer, opaque projector, film projector, screen, TV reception, record player, ear phone 등이 각급 學校別로 규정되어 있다.

2)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의 學校圖書館數量基準

1977년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는 1959년에 발표된 文部省의 學校圖書館基準 중에서 圖書의 總冊數 등이 現實의으로 적합하지 않고, 너무 낮은 數値로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基準을 提示하기 위하여 學校圖書館數量基準을 公표하였다.¹¹⁾ 이 기준은 수량기준의 基本原則, 기본도서, 藏書最低基準冊數, 장서의 配分비율, 年間購入冊數와 單價 등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學校圖書館基準이라고 하기 보다는 獨立된 學校圖書館資料基準이다. 이 기준의 內容을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藏書는 辭典, 事典, 年鑑, 圖鑑, 지도장, 年表, 등계서, 書誌, 색인, 概論, 통론, 傳記, 고전 등의 基本圖書群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의 教育目標 達成에 필요한 도서군을 追加하여 구성한다.

② 各 學校圖書館의 藏書는 학교의 종류별로 정해진 基本圖書 最低基準量 및 藏書 最低 基準冊數를 上廻하여야 한다.

③ 學校別 基本圖書 最低基準量은 初等學校 600種, 中學校 750種, 高等學校 1,000種으로 한다.

11) 上掲書, p. 27.

④ 基本圖書 最低基準量은 學校의 規模(學級數, 學生數 등의 多少)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리고, 分校 및 夜間課程 등은 각각 1개교로 간주한다. 또한, 專門教育을 주로 하는 高等學校의 경우는 設置되어 있는 1개의 學科마다 200종을 추가한다.

⑤ 學校 級別 및 學校規模에 따른 藏書最低基準冊數는 基本圖書 및 複本을 포함하여 다음의 <표 9>와 같이 한다.

⑥ 장서의 配分比率은 <표 10>의 數值를 標準으로 하고, 학교의 教育課程, 地域의 實情 등을 고려하여 設定한다. 다만, 配分比率은 冊數比를 意味한다.

⑦ 標準配分比率은 學校의 種類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한다. 즉, 初等學校의 경우는 低學年用 도서가 全體藏書의 30~40%정도 되어야 하며, 文學만으로 構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專門教育을 주로 하는 학과를 가진 高等學校에 있어서 는 그 專門領域의 圖書配分比率에 대하여 充分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표 9> 藏書最低基準冊數

| 구분 | 자 료 수 | 연간증가수 |
|------|---|---|
| 초등학교 | 1~ 6학급 5,000권 7~12학급 5,000권 + 500권 x 6학급 초과수 13~18학급 8,000권 + 400권 x 12학급 초과수 19~24학급 10,400권 + 300권 x 18학급 초과수 25학급이상 12,200권 + 200권 x 24학급 초과수 | 1~ 6학급 500권 7~12학급 750권 13~18학급 900권 19~24학급 1,000권 25학급이상 1,000권 +40x24학급 초과수 |
| 중학교 | 1~ 3학급 7,000권 4~ 6학급 7,000권 + 500권 x 3학급 초과수 7~ 9학급 8,500권 + 450권 x 6학급 초과수 10~12학급 9,850권 + 400권 x 9학급 초과수 13~15학급 11,050권 + 350권 x 12학급 초과수 16~18학급 12,100권 + 300권 x 15학급 초과수 19~21학급 13,000권 + 250권 x 18학급 초과수 22학급이상 13,750권 + 200권 x 21학급 초과수 | 1~ 6학급 500권 7~12학급 750권 13~18학급 900권 19~24학급 1,000권 25학급이상 1,000권 +40x24학급 초과수 |
| 고등학교 | 1~ 270명 10,000권 271~ 540명 10,000권 + 15 x 270명 초과수 541~ 810명 14,050권 + 13 x 540명 초과수 811~1,080명 17,560권 + 11 x 810명 초과수 1,081~1,350명 20,530권 + 9 x 1,080명 초과수 1,351명 이상 22,960권 + 7 x 1,350명 초과수 | 1~ 540명 800권 541~1,080명 1,080권 1,081이상 1권x학생수 |

〈표 10〉 藏書 標準配分比率

| 項目 學校 | 總類 | 哲學 | 歷史 | 社會 科學 | 自然 科學 | 工學 | 產業 | 藝術 | 語學 | 文學 | 合計 |
|----------|----|----|----|----------|----------|----|----|----|----|----|------|
| 初等學校 | 5 | 3 | 17 | 7 | 14 | 4 | 4 | 10 | 3 | 33 | 100% |
| 中學校 | 5 | 3 | 17 | 10 | 15 | 4 | 3 | 9 | 5 | 29 | 100% |
| 高等學校 | 5 | 9 | 15 | 10 | 15 | 4 | 3 | 7 | 7 | 25 | 100% |

4. 美國

美國 最初の 學校圖書館基準은 美國教育協會(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가 1918년에 채택한 「Standard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for Secondary Schools of Different Sizes」인데, 그 후 이 기준은 1920년에 美國圖書館協會가 採擇하여 공식적으로 出版¹²⁾하였다. 이후 社會의 변화와 科學技術의 발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1925년¹³⁾, 1945년¹⁴⁾, 1960¹⁵⁾년, 1969¹⁶⁾년, 1975¹⁷⁾년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가장 새로운 기준은 1988년에 간행된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¹⁸⁾이다.

美國에서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化에 대한 첫걸음은 1960년에 改訂된 學校圖書館基準이다. 즉, 이 基準에서 學校圖書館은 教育을 추진하는 原動力으로서 教授·學習過程을 支援하는 기능을 갖춤과 동시에 學校圖書館은 教授資料센터(instructional

- 12) Committee on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nd of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econdary Schools, *Standard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for Secondary Schools of Different Sizes*(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20)
- 13) Joint Committee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ndards*(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25)
- 14) Committee on Post-War Planning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chool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5)
- 15)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 1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9)
- 17)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Media Programs : District and School*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5)
- 18)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Chicago and London and Washington, D. C. : ALA and AECT, 1988)

materials center)이며, 司書教師는 教授資料專門家(instructional materials 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美國에서 가장 代表的인 1975년 基準과 1988년 基準을 대상으로 資料 基準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1) 1975년의 Media Programs

1975년 基準의 特徵은 學校圖書館基準과 視聽覺基準을 一元化하여 전통적인 도서, 연속간행물, 팜플렛 등의 印刷資料는 물론 각종 視聽覺資料, 마이크로자료와 그 기기, 게임, 模型, 조각, 標本 등의 觸覺資料, 나아가 閉鎖回路TV, 教育放送用 라디오, 복사 기기 등 모든 형태의 媒體와 器機를 統合하여 매체와 기기, 施設, 직원, 活動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시스템화하여 學校圖書館을 미디어센터화하는 것이다.

이 基準은 緒論, medial program, media program의 유형과 상호관계, 職員, media program의 運營, collection, 施設 결론,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資料基準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資料의 명칭은 印刷資料, 視聽覺機教材 등 다양한 學習資料를 통합하는 명칭인 media를 사용하고 있다.

② 學生數 500명 이하의 學校를 對象으로 한 媒體基準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학생수 500명 이하의 매체기준

| 구분 | 媒體의 種類 | 기 준 |
|-----------------------------------|---|---------------------------|
| 초 · 중 · 고등 · 학교 | 전체 자료 | 20,000점 이상, 학생1인당 40점 |
| | 도서 | 8,000~12,000권 혹은 1인당 24권 |
| | 잡지 및 신문 | 50~175종 |
| | Filmstrips(유무성) | 500~2,000점 혹은 1인당 1~4점 |
| | Slides, Transparencies | 2,000~6,000점 혹은 1인당 4~12점 |
| | Graphics(Posters, Art, Study Prints, Maps, Globes) | 800~1,200점 |
| | 16mm, Super 8mm Sound Films, Videotapes, TV Reception | Access to 3,000 titles |
| | Super 8mm Films, Silent | 500~1,000점 혹은 1인당1~2점 |
| | Audio Recordings, Tape, Cassettes, Discs, Audio Cards | 1,500~2,000점 혹은 1인당 3~4점 |
| | Games and Toys | 400~750점 |
| Models and Sculpture | 200~500점 | |
| Specimens | 200~400점 | |

2) 1988년의 Information Power

이 기준은 情報工學을 비롯한 科學技術의 발달, 새로운 情報源의 利用可能性 확대, 美國教育界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사회적 배경속에서 學生, 敎員, 管理者, 학부모 등이 다양한 情報源에 接近하고, 知識이나 情報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學校圖書館 media program에 대한 指針을 提示한 것으로 質的인 基準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준의 내용은 緒論, 使命과 課題, 학교도서관 media program, 學校圖書館 媒體專門家의 役割과 책임, 리더쉽, 計劃, 관리, 職員, 자료 및 기기, 施設, 學校區, 지역 및 州의 리더쉽, 附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資料 및 器械(resources and equipment)에 대한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資料에 대한 名稱이 media에서 resources and equipment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文獻資料는 물론 視聽覺機教材에 이르기까지 敎授·學習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media의 개념에서 學校區의 다른 學校圖書館은 물론 敎師, 學父母 등 다양한 情報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概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資料의 範圍는 기존의 文獻資料와 視聽覺資料에 최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Compact Discs, CD-ROM, Video Discs, Videotex, Computer Software, Interactive Video, Cable and Satellite Transmission까지 다양한 형태의 資料를 包含하고 있다.

③ 所藏資料의 規模는 量의으로 제시하지 않고 質的인 側面을 強調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情報의 形態가 多樣化 되었을 뿐만 아니라 傳達方法이 보다 直接的으로 바뀌어 바람직한 資料의 規模를 設定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資料의 規模를 나타내는 傳統的인 方法은 많은 매체의 형태에 있어서 不適合하며, 量의으로 규모가 큰 것 만으로 特定한 要求를 支援하는데에 충분한 資料를 所藏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所藏資料의 規模가 適正한가를 판단하려면 그 자료와 정보서비스가 利用者의 要求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評價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다. 자료규모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자료(collection)가 일정한 比率의 要求를 滿足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19) Ibid, p. 72

규모인가? 둘째, 그 자료가 標準選擇道具에서 추천되고 있는 기본적인 圖書目錄과 情報源인가? 셋째, 이용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료가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development)을 刺戟하고 促進시키는데 충분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는가 그리고 強調하고 있는 特定 프로그램을 支援하는데 충분한 資料를 提供하는 것인가? 넷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情報가 最新성이 있는가? 다섯째, 所藏資料에는 현대의 著者と 저자들의 著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要求와 興味를 充足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學校圖書館媒體센터의 資料는 도서관매체전문가와 敎職員의 協力에 의해서 學校의 教育課程을 支援할 수 있어야 하고, 敎師와 학생들의 敎授와 學習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英國

英國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學校圖書館의 resource center化가 시작되었다. 學校圖書館의 resource center화에 공헌한 자료는 1966년에 출판된 初等學校圖書館에 관한 著作²⁰⁾과 1972년에 출판된 中·高等學校圖書館을 위한 자료²¹⁾이다. 이 두 出版物은 學校圖書館과 resource center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을 수록하고 있다.

英國 最初의 學校圖書館基準은 1970년의 기준²²⁾과 1972년에 公刊된 非圖書資料를 위한 기준²³⁾이다. 이 기준은 1977년²⁴⁾과 1992년²⁵⁾에 改訂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 School Library Association, *The Library in the Primary School*, 2nd ed. (London : SLA, 1960)

21) School Library Association, *Libraries in Secondary Schools* (London : SLA, 1972)

22) The Library Association, *School Library Resource Centers : Recommended Standards for Policy and Provision* (London : LA, 1970)

23) The Library Association, *School Library Resource Centers : Recommended Standards for Policy and Provision - A Supplement on Nonbook Materials* (London : LA, 1972)

24) The Library Association, *Library Resource Provision in Schools :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New ed. (London : LA, 1977)

25) The Library Association, *Learning Resources in Schools :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School Libraries* (London : LA, 1992)

1) 1977년의 學校圖書館基準

1977년 기준은 1970년 기준과 1972년 기준을 改訂한 것으로 學校圖書館 resource center의 政策과 規定을 위한 재정확보, 學習資料 確保, 사서교사의 역할, 學習方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資料基準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資料의 명칭은 stock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stock은 情報과 사상, 事實이나 상상을 傳達해 주는 어떠한 자료로서 圖書館에서 教師와 學生들이 參照하거나 貸出할 수 있도록 有用하게 組織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stock의 類型은 圖書과 팜플렛, 連續刊行物, 지도 등의 印刷資料, 슬라이드, 필름 스트립, 映畫, TP 등의 필름형태의 자료, Discs,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Tapes, 모형, 견본 등의 Artefacts, Packs이나 Kits 등과 같은 복합매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資料의 量的인 基準을 設定한다는 것은 學校의 規模, 學生들의 수준, 教育課程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量的 基準은 각 학교의 要求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④ 資料의 量的 基準은 初等學校는 학생 1인당 11점, 中學校는 학생 1인당 13점, 高等學校는 학생 1인당 19점이다.

2) 1992년의 學校圖書館基準

1992년 기준에는 각 學校에 설치된 學校圖書館 resource center의 관리, 職員, 장서, 施設 기능, 學習方法, 봉사 등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資料基準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資料의 名稱을 resources로 使用하고 있으며, resources는 教育課程을 支援할 수 있으며, 學習過程에 긍정적으로 寄與할 수 있고, 學生들의 要求에 효과적으로 奉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資料의 範圍는 도서와 팜플렛, 連續刊行物, 차트와 포스터, 寫眞과 포스트카드, 映畫, 필름스트립,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등 필름형태의 자료, 녹음테이프와 音盤, Multimedia kits 등의 자료 외에 21세기 科學技術의 發達에 대비하여 마이크로형태자료, 人工衛星과 케이블TV, Videotext와 teletext, Online databanks, CD ROM과

compact discs, Software programmes 등의 자료도 포함한다.

③ 資料選定の 중요한 요인은 자료와 教育課程과의 관계, 학생들의 能力과 興味와 자료의 適切性, 자료의 最新性, 자료의 廣範性, 情報處理技術의 開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④ 資料의 量的 基準은 初等學校와 中等學校로 나누어 最低基準과 有效基準, 자료의 壽命 등을 제시하고 있다. 資料基準은 학생 1인당 必須科目 1과목당 1점, 기타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집계결과는 初·中·高等學校가 同一하다.

먼저, 初·中·高等學校의 最低基準(minimum provision)은 학생 1인당 13점이며, 有效基準(more effective provision)은 最低基準에 20%를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수명은 主題領域과 파손정도에 따르고 있는데, 初等學校의 경우는 4년에서 6년, 中等의 경우는 5년에서 7년이다.

한편, 資料의 更新은 전체자료의 3분의 2가 10년에서 30년 경과된 자료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興味를 誘發시키기 어렵다.

Ⅲ. 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 比較·分析

앞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일본, 美國, 영국 등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을 概觀해 본 결과,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의 核心的인 要素는 자료의 種類와 範圍, 기본 자료, 年次增加量, 자료의 主題別 構成比率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要素들을 중심으로 各國의 基準을 比較·分析해 보기로 한다.

1. 學校圖書館資料의 名稱과 範圍

1) 學校圖書館資料의 名稱

각 나라의 學校圖書館基準에서 사용하고 있는 圖書館資料의 名稱은 <표 1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과 日本은 「圖書館資料」를 사용하고 있고, 英國과 美國은 「Resource」를 사용하고 있다. 圖書館資料의 名稱에 대한 共通點은 圖書資料와 視聽覺資料 등 學校의 教育課程 展開와 教師와 學生들의 教授·學習에 必要한 모든 資料를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는 圖書資料만을 나타내는 매우 簡소한 用語인 「圖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教育課程 展開와 教授·學習에 必要한 모든 資料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用語로 改善되어야 하겠다.

〈표 12〉 學校圖書館資料의 名稱

| 區 分 | 名 稱 | 備 考 |
|-----|------|-------------------------|
| 韓 國 | 1967 | 圖書館資料 |
| | 1969 | 圖書 |
| | 1981 | 圖書館資料 |
| 中 國 | 1965 | 圖書館資料 |
| 日 本 | 1959 | 圖書館資料 |
| | 1977 | 藏書 |
| 美 國 | 1975 | Media |
| | 1988 | Resources and Equipment |
| 英 國 | 1977 | Stock |
| | 1992 | Resource |

2) 學校圖書館資料의 範圍

圖書館資料의 範圍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學校의 教育課程 展開에 이바지하고, 教師와 學生들의 教授·學習에 必要한 圖書資料와 視聽覺資料를 포함하였으나 最近에는 科學技術의 발달에 따라 CD-ROM, Videotex, Computer Software 등의 電子媒體는 물론 人工衛星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圖書館資料의 範圍는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第2條 3項에서 “圖書館資料라 함은 印刷資料, 시청각자료, 電算化資料, 행정자료,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에 必要한 資料”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學校教育에 必要한 자료라면 모든 자료가 學校圖書館資料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더욱이 最近에는 개개 學校圖書館의 資料만으로는 利用者의 要求를 완전히 充足시켜 줄 수 없어서 圖書館 相互協力の 必要性이 絶실히 要請되고 있으며,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있는 圖書館은 물론 Database나 정보센터의 정보 등 多樣한 情報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표 13〉 學校圖書館資料의 範圍

| 구 분 | 범 위 | 비 고 | |
|-----|------|----------------------|--|
| 韓 國 | 1967 | 圖書資料 + 視聽覺資料 | |
| | 1969 | 圖書 | |
| | 1981 | 圖書資料 + 非冊子資料 | |
| 中 國 | 1965 | 圖書資料 + 視聽覺資料 | |
| 日 本 | 1959 | 圖書資料 + 視聽覺機教材 | |
| | 1977 | 圖書資料 | |
| 美 國 | 1975 | 圖書資料 + 視聽覺機教材 | |
| | 1988 | 圖書資料 + 視聽覺機教材 + 電子資料 | |
| 英 國 | 1977 | 圖書資料 + 視聽覺機教材 | |
| | 1992 | 圖書資料 + 視聽覺資料 + 電子資料 | |

2. 總資料數와 年次增加量

各國의 總資料의 最低基準과 年次增加量은 <표 14>와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먼저, 總資料의 最低基準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과 중국 그리고 日本은 학생 1인당 5권 정도이며, 英國은 학생 1인당 11점에서 19점, 美國은 학생 1인당 40점을 最低基準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인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을 分析해 본 결과 初等學校는 2.8권, 中學校는 2.6권, 高等學校는 3.1권으로 外國의 最低基準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이 형편없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年次增加量을 살펴 보면, 韓國과 중국 그리고 日本은 대체로 학생 1인당 0.5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美國은 年次增加量에 대한 具體的인 基準은 없으나 資料의 最新性과 學生의 要求와 興味 充足을 強調하고 있으며, 英國은 資料의 壽命을 初等的의 경우 4-6년, 中等的의 경우 5-7년을 제시하고 있어 계속해서 資料의 更新을 强

調하고 있다.

〈표 14〉 總資料數와 年次增加量 比較²⁶⁾

| 區 分 | 總 資 料 數 | | 年 次 增 加 量 |
|-----|---------|---------------------------|------------------|
| 韓 國 | 1967 | 1인당 5권 | 1인당 0.5권 이상 |
| | 1969 | 초 2.8권, 중 2.6권, 고 3.1권 | |
| | 1981 | 초등 6.2권, 중등 5.3권 | 초등 0.8권, 중등 0.6권 |
| 中 國 | 1965 | 1인당 5권 | 1인당 0.25~0.5권 이상 |
| 日 本 | 1959 | 1인당 5권 | 1인당 0.5권 이상 |
| | 1977 | 초 11.1권, 중 13.8권, 고 20.2권 | 1인당 1권 |
| 美 國 | 1975 | 1인당 40점 | |
| | 1988 | 數量基準은 없고 質의 側面을 強調 | |
| 英 國 | 1977 | 초 11점, 중 13점, 고 19점 | |
| | 1992 | 1인당 13점 | |

3. 資料의 主題別 構成基準

學校圖書館의 資料構成은 特定 主題分野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文學과 參考圖書 일변도로 자료를 構成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는 教育課程 展開에 이바지하고 教師와 學生들의 教授와 學習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最近에는 21세기 情報時代를 指向하여 問題解決能力 育成과 열린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主題를 골고루 수용하여 學校圖書館資料를 構成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文獻資料 뿐만 아니라 視聽覺資料는 물론 電子資料까지도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學校圖書館資料를 主題別로 어떻게 構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初·中·高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外國의 主題別 構成基準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먼저, 初等學校의 경우 主題別 構成基準를 比較해 보면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

26) ① 韓國의 1969년 基準은 교육통계연보 1996 (서울: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1996), pp.24-29를 分析한 結果이다. 즉, 초·중·고별로 學級當 平均學生數를 算出한 후 基準으로 나온 값이다. ② 韓國의 1981년 基準은 初等과 中等 모두 36학급을 基準으로 하여 1996 教育통계연보에서 산출한 學級當 平均學生數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③ 日本의 1977년 基準은 北島武彦, “わが國における 學校圖書館基準に關する一考察” 東京學藝大學紀要: 第1部門 教育科學, 第29集(1978. 3), p.9를 참고하여 日本의 基本的인 學級數인 18學級(940명)을 基準으로 하여 算出한 값이다.

22 圖書館學論集(第 28 輯)

이 文學이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책과 기타도 사실상 문학의 영역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文學은 거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初等學校 主題別 構成比率 比較²⁷⁾

| 區分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自然科學 | 技術科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 그림책, 其他 | 合計 |
|---------|-------|------|-----|-------|------|------|------|-------|-------|----|---------|------|
| 韓國 | 4 | 2 | 2 | 8 | 13 | 7 | 5 | 3 | 25 | 16 | 15 | 100% |
| 日本 1959 | 5 | | 2 | 9 | 13 | 10 | 5 | 2 | 20 | 15 | 19 | 100% |
| 日本 1977 | 5 | | 3 | 7 | 14 | 8 | 10 | 3 | 33 | 17 | | 100% |
| 美國 | 2-5 | 0.5 | 1-2 | 5-10 | 10 | 10 | 5 | 0.5 | 25 | 20 | 20-25 | 100% |
| 平均 | 4.375 | 1.25 | 1.5 | 7.875 | 12.5 | 8.75 | 6.25 | 2.125 | 25.75 | 17 | 14.125 | |

이렇게 文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長點 즉, 문학은 人間의 感情을 가장 잘 움직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이 人間의 삶 그 자체를 描寫하고 있기 때문에 初等學校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고운 心性을 길러 주기 위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偉人들의 傳記와 地理,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歷史分野이며, 그 다음으로 初等學校 時節부터 科學에 대한 畧을 길러주기 위하여 自然科學, 技術科學分野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社會科學分野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哲學, 종교, 語學 등은 거의 無視하고 있거나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표 16〉 中學校 主題別 構成比率 比較

| 區分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自然科學 | 技術科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 合計 |
|---------|-----|------|-----|-------|------|------|------|-----|-------|------|------|
| 韓國 1967 | 5 | 3 | 3 | 10 | 15 | 10 | 6 | 6 | 27 | 15 | 100% |
| 韓國 1981 | 5 | 5 | 3 | 10 | 15 | 8 | 6 | 4 | 27 | 17 | 100% |
| 中國 | 5 | 1 | 1 | 12 | 11 | 10 | 9 | 3 | 28 | 20 | 100% |
| 日本 1959 | 7 | | 3 | 10 | 15 | 10 | 7 | 5 | 29 | 14 | 100% |
| 日本 1977 | 5 | | 3 | 10 | 15 | 7 | 9 | 5 | 29 | 17 | 100% |
| 美國 | 6-8 | 1-2 | 1-2 | 10-15 | 5-10 | 5-10 | 5-10 | 2-5 | 25-35 | 20 | 100% |
| 平均 | 5.7 | 2.25 | 2 | 10.75 | 13.1 | 8.75 | 7.4 | 4.4 | 28.3 | 17.2 | |

27) 美國의 學校圖書館資料의 主題別 構成基準은 John T. Gillespie, Diana L. Spirt,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New York & London : Bowker, 1983), p.185에 보면 初等과 中等으로 區分하여 놓고 있는데 中·高等學校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어서, 中學校의 主題別 資料構成基準을 <표 16>에서 살펴 보면, 初等學校와 마찬가지로 文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歷史, 자연과학, 社會科學, 기술과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哲學과 宗教는 낮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初等學校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그림책 및 기타」가 없어진 대신 語學과 文學을 보강하였으며, 哲學과 宗教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약간 보강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高等學校의 主題別 構成比率을 <표 17>에서 보면, 中學校의 비율과大同小異하게 文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自然科學, 역사, 社會科學, 기술과학, 藝術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學校와 다른 점은 文學과 歷史가 감소되고 哲學과 語學이 증가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中國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歷史」分野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표 17> 高等學校 主題別 構成比率 比較

| 區 分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自然科學 | 技術科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 合計 |
|---------|-----|-----|-----|-------|------|------|------|-----|-------|----|------|
| 韓國 1967 | 6 | 4 | 4 | 10 | 15 | 10 | 7 | 9 | 25 | 10 | 100% |
| 韓國 1981 | 6 | 6 | 4 | 10 | 15 | 9 | 7 | 8 | 25 | 10 | 100% |
| 中 國 | 6 | 3 | 1 | 12 | 11 | 10 | 9 | 5 | 25 | 20 | 100% |
| 日本 1959 | 8 | | 5 | 10 | 15 | 10 | 7 | 7 | 25 | 13 | 100% |
| 日本 1977 | 5 | | 9 | 10 | 15 | 7 | 7 | 7 | 25 | 15 | 100% |
| 美 國 | 6-8 | 1-2 | 1-2 | 10-15 | 5-10 | 5-10 | 5-10 | 2-5 | 25-35 | 20 | 100% |
| 平 均 | 6 | 3.6 | 2.9 | 10.75 | 13.1 | 8.9 | 7.4 | 6.6 | 25.8 | 13 | |

여기에서 한가지 注意해야 할 事項은 學校圖書館資料의 主題別 構成比率은 하나의 參考資料일 뿐이지 絕對的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各 學校의 教育課程과 特別活動, 學校行事 등이 각각 다를 수 있고, 實業系 高等學校의 경우는 工業系, 商業系 등 設立目的의 자체가 다르며, 같은 계통의 實業系 高等學校라 하더라도 設立된 學科가 상이할 수 있는 등 각 학교가 처해있는 實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資料의 主題別 構成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따라서, 개개 학교의 教育課程, 특별활동, 調査·研究分野,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教育課程 展開에 이바지하고, 教授·學習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主題別 構成을 하여야 하겠다.

IV. 韓國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案)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은 현재 法的인 效力을 가지고 있는 學校施設·設備基準을 근거로 하여 1996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算出해 보면 <표 18>과 같이 初等學校는 2.8권, 中學校는 2.58권, 高等學校는 3.08권이 된다. 그리고 現在 保有하고 있는 藏書量은 학생 1인당 初等學校는 3.96권, 中學校는 3.59권, 高等學校는 4.21권으로 기준보다는 많이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藏書現況²⁸⁾

| 區 分 | 學校數 | 學級數 | 學生數 | 學級當 學生數 | 藏書數 | 학급당 기준 | 1人當 藏書基準 | 1人當 藏書保有 |
|-------|-------|---------|-----------|------------|------------|-----------|-------------|-------------|
| 初等學校 | 5,732 | 106,594 | 3,800,540 | 35.7 | 15,048,972 | 100권 | 2.8 | 3.96 |
| 中 學 校 | 2,705 | 51,198 | 2,379,983 | 46.5 | 8,539,938 | 120권 | 2.58 | 3.59 |
| 高等學校 | 1,856 | 46,107 | 2,243,307 | 48.7 | 9,452,374 | 150권 | 3.08 | 4.21 |

그러나 우리나라의 最低 資料基準量은 美國보다는 약 14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自由中國과 日本보다는 약 2배 낮게, 日本의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基準보다는 약 5배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資料基準은 年間增加冊數에 대한 基準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連續刊行物 및 教授·學習에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視聽覺資料에 대한 基準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기준은 1969년에 制定된 이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나 단 한번도 改正되지 않아 현재 教育部가 추진하고 있는 教育의 情報化, 學校圖書館의 Multimedia化에 効果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實情이고, 學校圖書館 豫算 역시 1970년 師親會의 폐지와 함께 育成會法이 施行되면서 育成會費에서는 學校圖書館 運營費를 일체 支出하지 못하게 되었다.²⁹⁾ 育成會法 이후의 學校圖書館 運營費는 학생자율적 경비인 特別活動費에서 조금 얻어 쓰는 형편이다. 따라

28) 교육통계연보 1996 (서울: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1996), pp. 24-29, 855를 참고로 하여 산출하였다.

2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의 현안문제 정책자료," 도합회보, 제28권, 제2호 (1987. 3·4), p. 6.

서, 年間增加冊數에 대한 기준을 明文化하여 資料購入費를 확보하여야 하겠다.

한편, 앞으로 우리의 학생들이 살아 갈 21세기 情報時代는 情報洪水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情報를 선택, 蒐集, 활용하여 再創造할 것인가 하는 情報活用能力(information power)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學校教育도 教科書中心教育, 知識中心教育에서 벗어나 問題解決能力과 판단력, 創意力을 길러 줄 수 있는 資料中心教育의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자료중심교육은 教育課程展開에 이바지할 수 있고, 教授·學習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主題의 資料와 다양한 形態의 資料가 준비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현재 政府에서 教育改革課題로 추진하고 있는 學校의 情報化, 學校圖書館의 Multimedia화는 바로 열린교육을 통하여 情報活用能力을 육성하여 世界化, 정보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에 教授와 學習에 필요한 풍부한 資料를 확보하여 學校圖書館이 教育의 主體로 學校의 心臟部 役割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最近, 英國이나 美國 등의 先進國에서는 圖書館資料 形態의 多樣化 보다 직접적인 資料의 傳達方法, 자료의 量的 規模가 큰 것 만으로 利用者의 要求를 充足시켜 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學校圖書館資料基準을 量的 基準보다는 質的 基準을 重視하는 傾向으로 나아가고 있어 基準을 數量化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學校圖書館이 어느 정도 正常的인 水準에 도달해 있는 先進國의 경우일 뿐이고, 우리의 경우처럼 最低의 基準에 겨우 到達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風土에서는 아직까지 數量的인 基準을 마련하여 正常的인 水準에 到達하도록 한 다음에 質的 基準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 본 外國의 資料基準과 우리의 現實情을 고려하여 學校圖書館資料基準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學校圖書館資料基準은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학교마다 學級數와 學生數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大學圖書館基準과 같이 학생 1인당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1996년 학교당 평균학생수는 初等學校 663명, 中學校 880명, 高等學校 1,209명이다.

먼저, 總資料의 最低基準은 학생 1인당 初等學校 도서 5권, 시청각자료 3종, 中學校

는 도서 7권, 시청각자료 5종, 高等學校는 도서 10권, 시청각자료 7종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1996년 학생수에 적용해 보면, 初等學校는 도서 3,315권, 시청각자료 1,989종이며, 中學校는 도서 6,160권, 시청각자료 4,400종, 高等學校는 도서 12,090권, 시청각자료 8,463종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열린교육, 資料中心教育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연간증가책수는 학생 1인당 初等學校는 0.5권, 中學校는 1권, 高等學校는 1.5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기준을 1996년 학생수에 적용해 보면, 初等學校 332권, 中學校 880권, 高等學校는 1,814권이다. 이러한 年間增加를 위해서 필요한 資料購入豫算³⁰⁾은 初等學校 332만원, 中學校 880만원, 高等學校 1,814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어서, 連續刊行物は 학교마다 적어도 初等學校 20종, 中學校 30종, 高等學校는 50종은 되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안을 정리해 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학교도서관자료기준(안)

| 區 分 | 最 低 基 準 | 年 間 增 加 冊 數 | 連 續 刊 行 物 |
|-------|------------------------|-------------|-----------|
| 初等學校 | 1인당 도서 5권 시청각자료 3종 | 1인당 0.5권 | 학교당 20종이상 |
| 中 學 校 | 1인당 도서 7권 시청각자료 5종 | 1인당 1.0권 | 학교당 30종이상 |
| 高等學校 | 1인당 도서 10권 시청각자료 7종 | 1인당 1.5권 | 학교당 50종이상 |

그리고, 이상과 같은 基本的인 資料외에 최근에 科學技術의 發達과 함께 새로운 教育資料로 등장한 CD-ROM, Video Discs, Videotex, Computer Software, Interactive Video, Cable and Satellite Transmission, Internet 등의 電子媒體도 教育課程展開와 教授·學習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수용하여야 한다.

30) 자료구입예산의 기준은 이순덕, "1996년 출판동계," 출판문화, 제375호 (1997. 2), p. 27에 1996년도 도서 평균정가는 10,332원으로 나와 있고, 학습참고서는 9,693원, 아동도서는 7,531원이므로 도서평균정가를 10,000원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자료의 最新성과 機能性を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資料構成이 教育課程 展開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特定한 프로그램을 支援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美國은 이미 10년전에 資料의 數量的 基準을 폐지하고, 所藏資料의 適正規模 判斷基準으로 利用者의 要求를 어느 정도 充足시켜 줄 수 있는가를 評價하는 方向으로 바꾸어³¹⁾ 학생들의 要求와 興味를 充足시켜 줄 수 있도록 情報의 最新性を 강조하고, 圖書館資料속에 현대의 저자와 저자들의 著作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英國은 資料의 壽命을 初等學校는 4~6년, 中等은 5~7년으로³²⁾ 규정하는 한편, 資料의 更新은 전체자료의 3분의 2가 10년에서 30년 경과된 자료일 경우에는 學生들의 興味를 誘發시키기 어렵다³³⁾고 하였다. 따라서 資料의 最新성과 機能性を 유지하여 教師와 學生들의 調査와 學習에 대한 要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도록 수시로 學校圖書館資料를 更新하여야 한다.

이울러 資料의 最新성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適正規模에 到達한 후에는 成長率에 맞추어 年平均 3~5%를 除籍시킬 수 있도록 規定에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V. 要約 및 結論

오늘날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중추적인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學校現場에서 教師와 學生들에게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인정받기는 커녕 教育課程 展開과 教授·學習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核心的인 役割을 하기 위해서는 教育課程과 관계없는 小說이나 隨筆과

31)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Chicago &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p. 72.

32) Kinnell, Margaret. *Learning Resources in Schools: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School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92), p. 45.

33) *ibid.*, p. 42.

34) 孫正彪, “學校圖書館 藏書 및 施設基準 改善方案.” 大邱學校圖書館, 第2輯 (1988), p. 14.

같은 文學書籍이나 辭典이나 百科事典과 같은 參考圖書 정도의 資料構成이 아니라 教育課程과 밀접한 자료를 소장하여 이들 자료를 教育現場에 제공하여 教育課程 遂行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學校圖書館은 단순한 文獻資料中心의 圖書館運營을 止揚하고 도서와 함께 連續刊行物, 視聽覺機教材, 電子媒體까지 수용하여 教授와 學習에 필요한 모든 資料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教育情報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學校圖書館資料의 名稱은 기존의 文獻資料만을 나타내는 用語에서 벗어나 도서, 視聽覺資料, 전자자료 등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包括的인 名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圖書館資源(library resource)과 같은 용어이다.

② 학교도서관자료의 範圍는 教育課程 展開과 教師와 學生들의 教授·學習에 필요한 圖書資料, 視聽覺資料, 電子資料 등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圖書館의 資料, Database나 정보센터의 자료까지 다양한 情報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總資料의 最低基準은 학생 1인당 初等學校 도서 5권, 시청각자료 3종, 中學校는 도서 7권, 시청각자료 5종, 高等學校는 도서 10권, 시청각자료 7종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④ 年間增加冊數는 학생 1인당 初等學校는 0.5권, 中學校는 1권, 高等學校는 1.5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⑤ 連續刊行物은 學校마다 적어도 初等學校 20종, 中學校 30종, 高等學校는 50종은 되어야 하겠다.

⑥ 基本的인 資料외에 최근에 科學技術의 發達과 함께 새로운 教育資料로 등장한 CD-ROM, Video Discs, Videotex, Computer Software, Interactive Video, Cable and Satellite Transmission, Internet 등의 電子媒體도 수용하여야 한다.

⑦ 끝으로, 자료의 最新성과 機能性を 고려하기 위하여 適正規模에 到達한 후에는 成長率에 맞추어 年平均 3~5%를 除籍시킬 수 있도록 規定에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김효정.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 기준 분석." **圖書館學論集**, 第25輯 (1966 겨울호), pp. 51-82.
- 김효정.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1997.3), pp. 71-104.
-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 東京:丸善, 1988.
- 文部省. "學校圖書館圖書標準." **學校圖書館**, 第511號(1993.5), pp. 45-47.
- 北島武彦. "わが國における 學校圖書館基準に 關する —考察." **東京學藝大學紀要**: 第1部門 教育科學, 第29集(1978. 3), pp. 1-14.
- 山田泰嗣. "メディア・プログラムへのアプローチ: 學校圖書館についての 考察." **親和女子大學研究論叢**, 第11輯(1978. 3), pp. 101-117.
- 孫正彪. "學校圖書館 藏書 및 施設基準 改善方案." **大邱學校圖書館**, 第2輯(1988), pp. 6-19.
- 長倉美惠子. "諸外國の 學校圖書館基準." **學校圖書館**, 第282號(1974. 4), pp. 25-29.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關係 法規基準集**. 東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3.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SCP學校圖書館資料費計上方式." **學校圖書館**, 第510號 (1993. 4), pp. 44-49.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演習資料編集委員會 編. **圖書館學演習資料: 前篇**. 新訂11版. 東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6.
- 中國圖書館學會. "中國圖書館基準" 千惠鳳 譯. **도협월보**, 제9권, 제8호(1968. 10), pp. 8-20.
-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韓國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部會. "學校圖書館 基準." **도협월보**, 제8권, 제5호(1967. 6), pp. 7-10.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Media Programs: District and Schoo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5.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Chicago &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Davies, Ruth A. "School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6. New York: Marcel Dekker, 1979. pp. 360-371.

Hirsch, Felix E. "Library Standard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6. New York: Marcel Dekker, 1975. pp. 43-62.

Kinnell, Margaret. *Learning Resources in Schools: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School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92.

Library Association. *Library Resources Provision in Schools*. New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7.

Morris, Betty J.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3rd ed. New Jersey: Bowker, 1992.

Qureshi, Naimuddin. "Standards for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8. New York: Marcel Dekker, 1980. pp. 470-499.

A Study on the Standard of School Library Materials

Byun, Woo-Yeoul*

(Abstract)

In contemporary education, a school library is considered and valued as a vital and integral component of a school's instructional program. Especially, school library materials should contribute to execution of school curriculum through wide provision of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term 'library materials' should be changed into 'library resources' with a broad meaning. And, the scope of school library materials should include printed materials, audio-visual materials, electronic materials, associated equipment and other library resources.

2. It is desirable that the minimal standards of total collection is 5 books and 3 AV for a student in elementary schools, 7 books and 5 AV for a student in middle schools, 10 books and 7 AV for a student in high schools.

3. Annual growth is 0.5 for a student in elementary schools, 1 for a student in middle schools and 1.5 copy for a student in high schools. And, the number of minimal serials is 20 titles in elementary schools, 30 titles in middle schools and 50 titles in high schools.

4. Besides, basic collection, with the advances of technology, the school library collection should include new format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CD, video discs, videotex, computer software, satellite transmission etc.

5. The recommendable annual ratio of withdrawal is 3 to 5% for update and functional materials.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